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의3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직업교육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직업교육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대학학술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45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을 “학교혁신지원실장”으로,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교육과정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

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혁신지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혁신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으로 하며, 학교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학교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 제47호부터 제48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한다.

④ 교육과정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부터 제41호까지, 제45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연구과장·연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을 “기획연구과장·연수과장·정보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으로, “행정사무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을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제13조제7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제14조제2항 중 “정책연수과·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정책연수부·교원능력개발부 및 연수지원협력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을 “정책연수부장 및 연수지원협력부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연수과장”을 “정책연수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훈련”을 “연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훈련”을 “연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훈련정책의”를 “연수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교육훈련”을 “연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평가계획”을 “연수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교육실적”을 “연수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전산실습실”을 “정보화강의실”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4호) 중 “과”를 “부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수과정 개발 및 연수 발전 방안 연구

14. 고등교육기관 리더십 및 혁신역량 개발 연수과정의 개발·운영

15. 연수경비의 산정 및 연수 이수에 관한 사항

16.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 운영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원능력개발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수경비의 산정 및 연수 이수에 관한 사항

제14조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지원협력과장”을 “연수지원협력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및”을 “고도화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평가 및 이수”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발전협의회의”를 “발전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1.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또는 5급”을 “1명)은 보건복지부,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으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조정실,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로,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고용노동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34”를 “642”로 하고, 특정직 계 “92”를 “95”로 하며, 교육연구사 “57”을 “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6”을 “541”로 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2”로 하고,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0”을 “183”으로 하며,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1”을 “13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39”를 “647”로 하고, 특정직 계 “92”를 “95”로 하며, 교육연구사 “57”을 “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1”을 “546”으로 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2”로 하고,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0”을 “183”으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3”을 “13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을 “54”로 하고, 일반직 계 “20”을 “21”로 하며, 행정서기보 2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를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2”를 “1”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점역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특정직 계 “24”를 “22”로 하고, 일반직 계 “50”을 “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9”를 “51”로 한다.

별표 9 중 2. 제2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3. 제2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를 삭제하며, “총계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으로</u>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으로</u> 한다. <u><신 설></u>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 ----- ----- ----- <u>가등급</u> ----- ----- ----- ----- ----- -----.
② (생략) <u><신 설></u>	②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으로</u>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u>나등급으로</u> 한다.
③ (생략) <u><신 설></u>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의3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실장을</u> 보좌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국제협력관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실장을</u> 보

④ (생략)

⑤ ~ ⑬ (생략)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직업교육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② (생략)

<신설>

좌한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 ⑯ (현행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

----- 가등급-----

-----.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직업교육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고등교육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⑥ ~ ⑫ (생 략)

⑭ ~ ⑯ (생 략)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학교혁신지원실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교육과정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대학학술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45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⑩ ~ ⑯ (현행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⑰ ~ ⑲ (현행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학교혁신지원실장-----

----- 직무등급은 가등
급-----

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

②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
교혁신지원실장 밑에 두는 보좌
기관은 학교혁신정책관·교육
과정정책관으로 하며, 학교혁신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
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할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학교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1
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 제47호
부터 제48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한다.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 ⑪ (생 략)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생 략)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연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신 설>

⑤ (생 략)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교육과정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부터 제41호까지, 제45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한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 ⑭ (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획연구과장·연수과장·정보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 행정사무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현행과 같음)

⑥ -----

분장한다.

1. 삭 제

2. ~ 5. (생 략)

6.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7. (생 략)

8. · 9. 삭 제

<신 설>

⑦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생 략)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 · 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10.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⑦ -----
-----.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책연수부 · 교원능력개발부 및 연수지원협력부-----.

③ 정책연수부장 및 연수지원협력부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부장-----
-----.

④ 정책연수부장-----
-----.

1. 연수-----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 5. · 6. (생략)
- 7.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 및 평가
- 8. 교육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9.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 10. · 11. (생략)
- 12.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조사
- 13.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신설>

- 14. 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신설>

2. 연수과정 개발 및 연수 발전 방안 연구

- 3. 연수-----
- 4. 연수에 관한 -----
- 5. · 6. (현행과 같음)
- 7. 연수 -----

- 8. 연수평가계획-----
- 9. 연수실적-----
--
- 10. · 11. (현행과 같음)
- 12. ----- 인재개발 관련 -----

- 13. ----- 정보화강의실 -----
--
- 14. 고등교육기관 리더십 및 혁신역량 개발 연수과정의 개발·운영
- 17. -----
-- 부서-----

- 15. 연수경비의 산정 및 연수 이수에 관한 사항
- 16.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 운영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4. ~ 6. (생략)

7.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16. 연수경비의 산정

17.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8. · 19. (생략)

20.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21.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22. (생략)

⑤ 교원능력개발부장-----
-----.

1. · 2. (현행과 같음)

3. 연수경비의 산정 및 연수 이수에 관한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⑥ 연수지원협력부장-----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고도화 및 -----
--

16.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17. ----- 평가-----

18. · 19. (현행과 같음)

20. ----- 발전협의회

21.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22.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5명(6급 2명, 7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④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7퍼센트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명)은 보건복지부,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

--- 국무조정실,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한시정원) ① (생 략)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
제23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
2023년 2월 28일-----

----- 중소벤처기업부 -----
-----.

<삭 제>

신 · 구정원대비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34</u>		<u>642</u>	+8	
특정직 계	.		.		.		
	.		.		.		
	.		<u>92</u>		<u>95</u>	+3	
교육연구사	.		.		.		
	.		.		.		
일반직 계			<u>57</u>		<u>60</u>	+3	
			<u>536</u>		<u>541</u>	+5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1</u>		<u>52</u>	+1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 <u>180</u>	• <u>183</u>	+3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 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 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 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 <u>131</u>	• <u>132</u>	+1
• •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39	647	+8
특정직 계	92	95	+3
교육연구사	57	60	+3
일반직 계	541	546	+5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	52	+1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 <u>180</u>	• <u>183</u>	+3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 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 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 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 <u>133</u>	• <u>134</u>	+1
• •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3</u>	• <u>54</u>	+1
•	•	•	
•	•	•	
일반직 계	<u>20</u>	<u>21</u>	+1
•	•	•	
•	•	•	
<u>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신 설></u>	<u>1</u>	+1
운전서기보	<u>2</u>	<u>1</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점역담당)</u>	<u><신 설></u>	<u>1</u>	+1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특정직 계	<u>24</u>	<u>22</u>	-2
일반직 계	<u>50</u>	<u>52</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9</u>	<u>51</u>	+2

[별표 9]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3조 관련)

1. 제2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전산사무관	1
전산주사	1

2. 제2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